

##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03월 23일(목) 오전 11시

2.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99 (신평동), (주)동성코퍼레이션 B1 연수실

###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2)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9기(2016.1.1~2016.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20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백정호)

-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윤택)

- 제3-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철수)

- 제3-4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홍남)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및 지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 (2017년 3월 16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13.5.28)에 따라 동법의 증권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 (Shadow Voting) 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 "의사표시통지서" 수신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02) 3774-3244 ~ 5

**의사표시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3월 23일 개최하는 금호전기주식회사의 제9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주민등록번호				
의결권 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13일~2017년 3월 22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박 충 열 (직인생략)**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2조(목적) 1.~31. 생략 32. 위 각 호에 관련된 투자 및 부대사업</p>	<p>제2조(목적) 1.~31. 생략 <b><u>32. 수송장비(차량, 철도, 항공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u></b> <b><u>33. 건설장비 부품 제조 및 판매업</u></b> <b><u>34. 건축자재 부품 제조 및 판매업</u></b> <b><u>35. 전기·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업</u></b> <b><u>36.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u></b> <b><u>37. 복합소재 제조 및 판매업</u></b> 38. 위 각 호에 관련된 투자 및 부대사업</p>	<p>사업목적 추가</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b><u>이 정관의 개정안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u></b></p>	<p>-</p>